

## [조합명] 결성계획서

### I. 개요

#### 1. 명칭

- (조합명)

#### 2. 목적

- 본 조합은 유망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투자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,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함을 목적으로 함

#### 3. 조합의 규모

- 금 \_\_\_\_\_ 원 (₩\_\_\_\_,\_\_\_\_,\_\_\_\_)

#### 4. 존속기간

- 본 조합의 존속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조합설립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( )년
- 조합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미처분 투자유가증권이 남아있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( )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

#### 5. 조합원의 구성

- 업무집행조합원 :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고 조합원 중에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 ( )명
- 유한책임조합원 : 업무집행조합원을 제외한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 ( )명

### II. 출자계획

#### 1. 출자금 총액, 출자 1좌의 금액

- 출자금 총액 : 금 \_\_\_\_\_ 원 (₩\_\_\_\_,\_\_\_\_,\_\_\_\_)
- 출자 1좌의 금액 : 금 \_\_\_\_\_ 원 (₩\_\_\_\_,\_\_\_\_,\_\_\_\_)

#### 2. 출자의 시기 및 방법

- 조합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입출금계좌에 출자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현금으로 납입
- 출자금을 납입하고 결성이 완료되면 출자 증서를 발행 및 교부

- 3. 조합원의 모집계획(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불법모집자금 제외)
  - (사모 방식에 의한 조합원 모집계획 서술)

### III. 조합의 자산운용계획

#### 1. 투자방법

-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존속기간 내에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업체를 심사 후 선정
- 투자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유한책임조합원 ( )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자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
- 투자는 투자업체에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법을 통해 실시
- (이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술)

#### 2. 투자한도

- 조합 결성금액 중 운영경비를 제외한 출자금 한도 내에서 투자
- (이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술)

#### 3.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등

- 업무집행조합원은 본 조합의 존속기간 중 조합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적인 투자수요에 지장이 없도록 벤처·창업기업에 투자되지 아니한 조합자산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·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 가능
- (이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술)

#### 4.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

- 연도별 투자 및 회수예정 금액

구분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...	계
투자	a	b	c	d	e	...	a+b+c +d+e
회수				A+B	C+D+E	...	A+B+C +D+E

- 투자회수 방법
  - 국내외 주식시장 상장 후 장내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
  - IPO 이전에 대주주 또는 제3자에게 보유지분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
  - 기타 투자금의 유동화가 가능한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한 투자금 회수

## IV. 조합 재산배분계획

### 1. 분배대상 재산

- 투자수익, 운용수익 및 출자원금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관리보수, 성과보수 및 조합 운영비용을 공제한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분

### 2. 분배방법 : 분배원칙, 분배시기, 분배절차 등

- 분배원칙
  - 조합자산의 배분은 조합 해산 시,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분배함을 원칙
  - 조합 해산 시 현금화되지 못한 유가증권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현물로 분배 가능
- 분배시기
  - 조합자산의 배분시기는 조합의 해산 시를 원칙으로 하되, 조합원 총회에서 달리 정할 경우 이에 따를 수 있음
- 분배절차
  - 조합원 (\_\_\_분의 \_\_) 이상 참석한 동의 후 분배

### 3. 조합의 제반비용 : 운영경비, 관리보수, 성과보수 등

- 운영경비
  - 조합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비용
  -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소송비용
  - 조합의 청산에 관한 비용
  - 회계감사 및 법률고문 수수료
  - 기타 조합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비용으로 조합원총회의 일반결의를 얻은 경우
  - 위 사항을 제외한 업무집행 비용은 업무집행조합원의 비용으로 처리
- 관리보수
  - 조합의 존속기간 중 업무집행조합원에게 (아래 예시 참고)을 관리보수로 지급
  - 관리보수는 (연초, 연말, 매월, 매분기, 매반기 등)에 지급

(주1)

관리보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과의 합의에 따라 정하며, 일정부분을 선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

(예1)

존속기간 중 총결성금액 중 투자잔액(평균잔액)의 3%와 미투자자산(평균잔액)의 0.5%를 매년 지급

\* 평균잔액 산정시점은 매분기말, 매반기말, 매년말 등 다양하게 설정 가능

(예2)

존속기간 중 조합 총결성금액의 2.5%를 매년 지급 등

\* 지급비율은 조합원 합의로 조정 가능

• 성과보수

- 조합 존속기간 중 총수익률이 목표수익률 ( )%이상인 경우 조합원총회 승인을 거쳐 총수익에서 조합 운영비용을 공제한 후 초과수익의 ( )%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
- 성과보수는 조합의 최종 결산시에 지급

(주1)

성과보수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조합총회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음

(주2)

초과수익 = 총수익 - 기준수익

(주3)

기준수익 : 출자금 총액에 대하여 조합의 존속기간 중 기준수익률로 복리적용한 수익의 합계

#### 4. 목표수익률 및 산정기준

- 조합 존속기간 동안 연평균 내부수익율(IRR:Internal Rate of Return) ( )%

#### 5. 손실금 총당

- 조합의 청산시까지 규약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운영비용 및 관리보수를 제외하고, 청산 이전에 조합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배분금 및 제명 조합원에 대한 환급금과 청산시에 조합원에게 배분할 재산의 합계액이 조합의 출자금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에서 우선 총당
- 업무집행조합원이 손실금을 총당한 후에도 잔여 손실금이 있는 경우 유한책임조합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총당

#### 6. 조합해산 및 청산의 절차, 방법

- 조합의 존속기간 만료 시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해산이 가능

- 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
-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때
- 업무집행조합원이 탈퇴한 때 (단, 업무집행조합원이 탈퇴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새로운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)
- 업무집행조합원의 파산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
- 조합자산이 잠식되거나 기타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출자지분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
- 청산인의 선정
  - 원칙적으로 청산인은 업무집행조합원
  - 다만, 조합 규약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 가능
- 청산 절차
  - 청산인은 지체 없이 재산 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에게 송부해야 함
  -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조합재산을 배분할 수 없으며,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유보하고 잔여재산 배분 가능

## V. 업무집행조합원 현황 (개인의 경우)

### 1. 일반사항

- 성명 : (\_\_\_\_\_)
- 주소 : (우편번호) \_\_\_\_\_
- 주민등록번호 : (\_\_\_\_\_ - \_\_\_\_\_)
- 학력 : (\_\_\_\_)고등학교  
(\_\_\_\_)대학교(\_\_\_\_전공)

### 2. 주요경력

- ('90~'00) (\_\_\_\_)기업 상무
- ('00~'10) (\_\_\_\_)기업 대표이사

### 3.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등

## V. 업무집행조합원 현황 (법인 및 단체의 경우)

### 1. 법인·단체에 관한 일반사항

- 법인명 : (\_\_\_\_\_)
- 소재지 : (우편번호) \_\_\_\_\_
- 사업자 등록번호(또는 고유번호) : (\_\_\_\_ - \_\_\_\_ - \_\_\_\_\_)

2. 대표자에 관한 일반사항

- 성명 : (\_\_\_\_\_)
- 주소 : (우편번호) \_\_\_\_\_
- 주민등록번호 : (\_\_\_\_\_ - \_\_\_\_\_)
- 학력 : (\_\_\_\_)고등학교  
(\_\_\_\_)대학교(\_\_\_\_)전공
-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등

3. 투자심사 전담 전문인력에 관한 일반사항

- 성명 : (\_\_\_\_\_)
- 주소 : (우편번호) \_\_\_\_\_
- 주민등록번호 :
- 학력 : (\_\_\_\_)고등학교  
(\_\_\_\_)대학교(\_\_\_\_)전공
- 주요경력
  - ('10~'12) (\_\_\_\_)투자 심사역
  - ('12~현재) (\_\_\_\_)투자 팀장
-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등

VI. 조합규약(안) : 표준규약 [별지7] 권고